

개인(신용)정보처리방침

본 방침은 「개인정보보호법」에 따른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를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.

1. 개인(신용)정보의 처리 목적
2. 개인(신용)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
3. 개인(신용)정보의 제 3 자 제공시 제공하는 개인(신용)정보의 종류, 제공대상, 제공받는 자의 처리목적에 관한 사항
- 4.

□ 당행이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이용목적 및 종류

1. 이용목적

- 1) 해당 신용정보 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등 상거래 설정 및 유지여부 판단
- 2) 채권추심
- 3) 마케팅
- 4)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

2. 신용정보의 종류

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. 다만, 다른 법령에 따라 공시(公示) 또는 공개된 정보나 다른 법령에 위반됨이 없이 출판물 또는 방송매체나 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(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 2 조제 3 호의 기관 중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공공매체를 통하여 공시 또는 공개된 정보는 제외한다.

1)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

생존하는 개인의 성명, 주소, 주민등록번호, 외국인등록번호, 국내거소신고번호, 여권번호, 성별, 국적 및 직업 등과 기업(사업을 경영하는 개인 및 법인과 이들의 단체를 말한다. 이하 같다) 및 법인의 상호, 법인등록번호, 사업자등록번호, 본점 및 영업소의 소재지, 설립연월일, 목적, 영업실태, 종목, 대표자의 성명 및 임원 등에 관한 사항(2 항에서 5 항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와 결합되는 경우만 해당한다).

2)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

대출, 보증, 담보제공, 당좌거래(가계당좌거래를 포함한다), 신용카드, 할부금융,

시설대여와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그 거래의 종류, 기간, 금액 및 한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개인신용거래정보와 기업신용거래정보

3)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

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연체, 부도, 대위변제, 대지급과 거짓, 속임수,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용질서 문란행위와 관련된 금액 및 발생·해소의 시기 등에 관한 사항. 이 경우 신용정보주체가 기업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.

- 가. 「국세기본법」 제 39 조제 2 항에 따른 과점주주로서 최다출자자인 자
- 나. 「국세기본법」 제 39 조제 2 항에 따른 과점주주인 동시에 해당 기업의 이사 또는 감사로서 그 기업의 채무에 연대보증한 자
- 다. 해당 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지분총액의 100 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최다출자자인 자

4)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

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

- 가. 개인의 재산·채무·소득의 총액 및 납세실적
- 나. 기업의 연혁·주식 또는 지분보유 현황 등 기업의 개황(概況), 판매명세·수주실적 또는 경영상의 주요 계약 등 사업의 내용, 재무제표(연결재무제표 및 결합재무제표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등 재무에 관한 사항과 「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의견 및 납세실적

5) 기타 이와 유사한 정보

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

- 가. 법원의 금치산선고·한정치산선고·실종선고의 재판, 회생·개인회생과 관련된 결정, 파산선고·면책·복권과 관련된 결정,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등재·말소 결정 및 경매개시결정·경락허가결정 등 경매와 관련된 결정에 관한 정보
- 나. 국세·지방세 또는 관세의 체납 관련 정보
- 다. 벌금·과태료·과징금 또는 추징금 등의 체납 관련 정보
- 라. 사회보험료·공공요금 또는 수수료 등 관련 정보
- 마. 기업의 영업에 관한 정보로서 정부조달 실적 또는 수출·수입액 등의 관련 정보
- 바. 개인의 주민등록 관련 정보로서 출생·사망·이민·부재에 관한 정보, 주민등록번호·성명의 변경 등에 관한 정보
- 사. 기업등록 관련 정보로서 설립, 휴업·폐업, 양도·양수, 분할·합병, 주식 또는 지분 변동 등에 관한 정보
- 아.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

행정처분에 관한 정보 중에서 금융거래 등
상거래와 관련된 정보

자.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등급, 신용조회회사의 신용정보 제공기록
또는 신용정보주체의 신용회복 등에 관한
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

**□ 신용정보를 제 3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신용정보의 종류, 제공 대상, 제공받는
자의 이용목적**

1)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

— 당행이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종류와 동일함.

2) 제공대상

— 신용정보집중기관*, 신용정보회사*,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해
제출을 요구하는 공공기관 등

* (신용정보집중기관: 전국은행연합회, 여신금융협회등, 신용정보회사:
NICE 신용평가정보, 코리아크레딧뷰로(주)등)

3)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

—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를 집중·수집·보관·제공

—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

□ 보유 및 이용기간*,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**

* 신용정보의 보유기간 : 당해계약 소멸시까지

**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: 당행 문서관리 규정에 의함

□ 신용정보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 그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

- 당행 신용정보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업무내용 및 수탁자를 인터넷
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.

□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및 행사방법

1) 본인신용정보 제공·열람청구권

—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표시하고 신용정보업자가
보유하고 있는 본인정보의 제공 또는
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2) 본인신용정보 정정청구권

—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
신용정보회사등에게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3) 신용정보제공사실의 통보요구권

— 신용정보주체는 최근 1 년간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제공한 내역을
통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4) 개인신용정보 제공·이용 동의 철회권

—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외의 목적으로
제공동의를 한 경우 인터넷홈페이지, 유무
선통신, 서면등을 통하여 개인신용정보의 제공동의를 철회할 수

있습니다.

□ 신용정보관리·보호인

담당자	책임자
부 서 : 여신심사관리부 직 책 : 과 장 성 명 : 박희경 전화번호 : 02-3788-6629 연 락 처 : parkhk@kr.icbc.com.cn	부 서 : 여신심사관리부 직 책 : 부 장 성 명 : 박재홍 전화번호 : 02-3788-6677 연 락 처 : parkjh@kr.icbc.com.cn

□ 개인신용정보관리·보호인

담당자	책임자
부 서 : 개인금융업무부 직 책 : 과장 성 명 : 조준기 전화번호 : 02-3783-6739 연 락 처 : chojk@kr.icbc.com.cn	부 서 : 개인금융업무부 직 책 : 부지점장 성 명 : 김후남 전화번호 : 02-3788-6675 연 락 처 : jinhounan@kr.icbc.com.cn